

광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53410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오수현

피고B

변론 종결2024. 10. 16.

판결 선고2024. 11. 2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피고로부터 오토실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22. 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으면 원고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을 위반하여 2022. 4.경 이 사건 기계를 폐기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매매대금 4,000만 원의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제3호증은 원고의 남편 C과 피고의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으로 이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만으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합의해제와 매매대금 반환약정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오히려 피고는 2017. 3. 21.경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원고가 2021. 10. 31.경 폐업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수령을 지체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년경부터 약 5년간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다가 2022. 4.경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였고, 이와 같은 이 사건 기계의 처분에 피고의 귀책사유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수